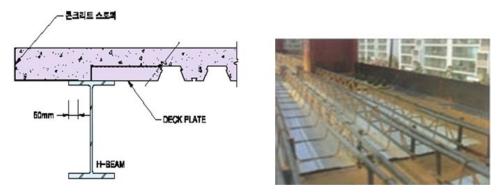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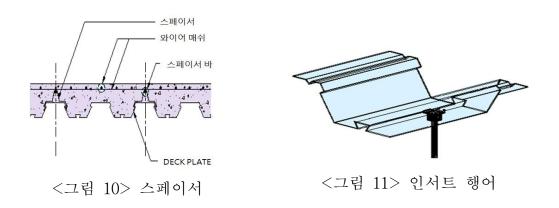
(라) "콘크리트 스토퍼(Stopper)"이라 함은 데크플레이트 외측면 가장자리 부위에 설치되는 데크플레이트 부속자재를 말한다. 콘크리트 타설시 슬래브 끝면 마감과 더불어 콘크리트 누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

<그림 9> 콘크리트 스토퍼

(마) "스페이서(Spacer)"이라 함은 D6 이상의 철선으로 데크플레이트의 1~2산부위마다 1개씩 설치하여 피복두께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부속자재를 말한다.



- (바) 인서트 행어(Insert hanger)"이라 함은 천정시공과 설비배관을 위해 데크 플레이트 하부의 인서트 피트부위에 설치되는 데크플레이트 부속자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 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